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99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03.1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세운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세운3-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공람기간 : 2020.2.12. ~ 2020.2.26.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1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입정동 189-1일대
- 시행면적 : 4,729.71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 이창하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 (삼성동) (☎) 02-6202-3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12. 28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변경사유 : 건축계획의 변경 등
- 변경내용 : 공동주택(아파트)에서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·원룸형아파트)로 변경(208세대, 주택24세대 증가, 자상 3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509.6617㎡증가 등

4. 관계도서 : 세운 3-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

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